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1가단2409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류정원, 정천석

피고보조참가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과 E 사이에 2018. 7. 27.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D 사이에 2019. 11.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9. 11. 8. 접수 제103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부담이득금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처리 및 운영하는 특수공법인이다. 소외 E, D은 원고에 의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의 체납자들로써 형제이고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는 E, D의 조카(친형인 소외 B의 자녀)이다.

나. E · D의 의료법위반 및 사기행위

(1) F의료재단 G요양병원 관련 범죄사실(E)

E은 별지 범죄사실1에 대하여 E은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394 사건에서 2019. 8. 22.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19노345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0도5494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2) H의료재단 I요양병원 관련 범죄사실(E)

E은 별지 범죄사실2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446 사건에서 2021. 1. 7.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021. 1. 15.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21노27 사건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다.

(3) J의료재단 K요양병원 관련 범죄사실(E 및 D)

E, D의 별지 범죄사실3에 대하여 원고는 2018. 8. 3.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2020. 2. 7. 강원도지방법경찰청으로부터 E의 별지 범죄사실3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E, D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원고는 E에 대하여 2018. 12. 10.경, 2019. 11. 5.경, 2020. 3. 10.경 등 3회에 걸쳐 환수결정금액을 통보하였고, 최종결정금액은 합계 36,555,445,090원이다.

원고는 D에게 J의료재단 K요양병원 관련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2020. 3. 10.경 처분금액 2,004,542,5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를 하였다.

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E과 D은 2018. 7. 27.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3.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은 피고에게 2019. 11. 7.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9. 11.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처분시 채무초과 상태

위와 같이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8. 8. 13.자로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행위 당시 E은 채무초과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D에게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다시 조카인 피고에게

이를 다시 증여하였으므로 수익자인 D과, 전득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¹⁾).

나. 피고

원고가 E, D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E이 무자력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부(父) B의 소유였는데 E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E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채무 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대물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E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E로서는 그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D과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데 E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채무자인 E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따라서 채무자인 E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홍준

별지

1)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